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1925호)

2024.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3. 7. 18.
3. 회 부 일 : 2023. 7.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대상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 결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학원,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서 근무하다 적발된 사람이 121명에 달하였음. 이는 관련 제재가 경미하여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동 제도가 목적인 바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및 제3항 삭제).

Ⅲ. 검토의견

1.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 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67조).

현행	개정안
제67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제6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u> <u>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u> <u>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u> <u>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u> <u>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u> <u>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u> <u>아니하는 아동·청소년 관련</u> <u>기관등의 장</u>
2. (생략) ③ <u>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u> <u>장이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u> <u>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u>	2. (현행과 같음) <u><삭제></u>

현행	개정안
<u>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제56조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고 하는 자 등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하며(같은 조 제5항), 이러한 조회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67조제3항).

< 현행법 제56조 및 제67조 >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1. ~ 25. (생략)

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제67조(과태료)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이 부과¹⁾되는데, 2023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아니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52건, 부과금액은 5억원 수준임.

<성범죄 경력 미조회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적발 건수	부과 금액
2021년	345	660,800
2022년	319	535,938
2023년	252	498,892

자료: 여성가족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6조 제5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법 제67조 제3항	300	400	500

그런데 현행법 제57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에의 취업 점검 결과 최근 5년간 매년 60명이 넘는 성범죄 경력자가 적발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 120명에 달하고 있는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효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최근 5년간 취업제한 여부 점검 조치 결과 >

구분	점검대상		적발인원	조치 사항
	기관	인원		
2019년	543,721	3,172,166	108	• 기관폐쇄 등 28 • 종사자 해임 51
2020년	543,398	3,271,506	79	• 기관폐쇄 등 50 • 종사자 해임 58
2021년	533,315	3,382,478	67	• 기관폐쇄 등 28 • 종사자 해임 39
2022년	549,038	3,418,865	81	• 기관폐쇄 등 38 • 종사자 해임 43
2023년	548,600	3,755,360	120	• 기관폐쇄 등 45 • 종사자 해임 등 75

주: 기관폐쇄등에는 기관 폐쇄, 운영자 변경이 해당됨.

자료: 여성가족부자료를 재구성

개정안은 취업자등의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를 위반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확인 의무 이행 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첫째,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나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현행법은 취업제한 기간 중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²⁾하고 있는데, 성범죄 경력 미확인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은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 취업자등의 범죄 경력 확인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범죄 경력 확인의무 위반시 제재 관련 입법례 >

「아동복지법」

제75조(과태료)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②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2)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둘째,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 위반행위가 제도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인 경우 과태료 상한의 상향보다는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는 점, 현행법에서 연 1회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 등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있어³⁾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사전 경력 확인의무가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거부와 동일한 수준의 행정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유사입법례에서 동일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4

-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 ④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